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 731-6112

서울시보

선 람	기관의장

제2856호 2008. 8. 7.(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08-1410호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08-1425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보 게재내용은 발행일에 서울시 사무자동화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TEL. (02)731-6112
- 서울시보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일때는 다음날 발행.
- 서울시보게재접수는 D-3일까지 접수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접수마감>

월요일 14:00

※ 시보게재접수를 중복되지 않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보를 발행한 후 접수되는 경우)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원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중복된 공고(신문, 관보, 시보, 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 람									
--------	--	--	--	--	--	--	--	--	--



◆ 고 시

제2008-27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6
제2008-272호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아파트지구 4지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 도면 작성	8
제2008-273호 도시관리계획(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11
제2008-274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21
제2008-275호 도시관리계획(상수역세권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31

◆ 공 고

제2008-14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43
제2008-1428호 측량업 신규등록	44
제2008-143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알림	44
제2008-1439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44
제2008-1443호 특별시도 노선인정	45
제2008-1450호 측량업 신규등록	45

◆ 구 고 시

제2008-5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중구)	46
제2008-4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및 지형도면(성동구)	46
제2008-3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강북구)	48
제2008-46호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노원구)	53
제2008-64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은평구)	57
제2008-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지형도면(서대문구)	65
제2008-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지형도면(서대문구)	65
제2008-6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중복결정 및 지형도면(서대문구)	66
제2008-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마포구)	66
제2008-25호 신월 · 신정 뉴타운 제1구역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양천구)	67
제2008-5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강서구)	69
제2008-3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효(동작구)	70
제2008-3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동작구)	70
제2008-3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서초구)	71

◆ 구 공 고

제2008-4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환기구) 실시계획 열람(광진구)	73
제2008-3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노원구)	73
제2008-32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금천구)	78
제2008-5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및 주차장(중복)]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영등포구)	79
제2008-625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도로)사업 공사완료(서초구)	80

◆ 사업소고시

제2008-132호, 133호, 134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81
제2008-135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82
제2008-182호, 183호, 184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82
제2008-185호, 186호 하천점용허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	83

◆ 사업소공고

제2008-24호 소방시설업 등록(은평소방서)	84
제2008-29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구로소방서)	84
제2008-30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구로소방서)	84
제2008-19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영등포소방서)	85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10호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 위원회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8년 8월 7일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사유
이 규칙은 성북구 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 지적정리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적정리가 완료되었으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전화: 02)6361-3950, FAX: 02)3707-8069, E-mail : cho-6650@hanmail.net)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25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08년 8월 7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원에 새로 설치한 풋살경기장에 대한 공원시설 이용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종 별		사용기준	이 용 료
풋살 경기장	10인용	1회 2시간	30,000원 ~39,000원
	6인용		20,000원 ~26,000원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푸른도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푸른도시정책과 [전화: 02)2115-7520-2, FAX: 02)2115-7539, E-mail : oratt@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http://greencity.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1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조성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운동장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85,542.1	감85,542.1	-	조선총독부 고시제208호 (40.3.12)	

나.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지하도로	-	중구 을지로7가 18-11번지 일대	832.5	감832.5	-	서울시고시 제528호 (79.12.26)	

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증68,947	68,947	-	도로(광로3-6호선) 와 중복되는 부분 (5,989m) 포함

- 건축물의 범위

구분	시설명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신설	문화시설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60%이하	150%이하	5층이하	일반상업지역

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청사	-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일대	-	증817	817	-	119 안전센터

- 건축물의 범위

구분	시설명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고
신설	공공청사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일대	60%이하	400%이하	4층이하	일반상업지역

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중구 을지로가 2-38번지 일대	-	증1,2434	1,2434	-	

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	주간선 도 로	750	광희동 광 장	동대문 광 장	일반 도로	-	내무부고시 제23호 (52.3.25)	-
변경	광로	3	6	40 ~56	주간선 도 로	750	광희동 광 장	동대문 광 장	일반 도로	-	내무부고시 제23호 (52.3.25)	버스베이 설치에 따른 일 부구간 폭원확장 (동대문디자인 플라자구간 : L=165m, B=40~56)

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주차장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일대	9,5604	-	9,5604	서울시고시 제72호 (91.6.11)	현재 결정된 주차장 부지 중 대로3호선 일부(2,406m)와 중로1-161호선 일부(2,211m)는 중복결정(지상도로, 지하주차장)

- 3. 관계도면 : 생 략 (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 4.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6360-4782) 및 중구 도시관리과(☎2260-189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2호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아파트지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건설부고시 제131 (1976. 8. 21)호에 의거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0-272 (2000. 9. 25)호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변경)결정, 송파구고시 제2002-53 (2002. 9. 18)호로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2006-66 (2006. 2. 23)호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 송파구 고시 제2006-46 (2006. 10. 19)호로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76 (2008. 5. 29)호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주택법 (법률 제6916호)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6852호)부칙 제5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아파트지구 4주구 정비계획』을 변경지정(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 1. 명칭, 위치 및 면적
 - 가. 지구명 : 잠실아파트지구
 - 나. 위 치 :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일대
 - 다. 면 적 : 2,074,940.0㎡
- 2.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계획 면적표 정정
- 3. 세부 변경내용
 - 가. 용도 지역, 지구
 - 변경 없음
 - 나. 건축에 관한 계획 (4주구)
 - 주택용지 : 275,554.0㎡ → 271,764.6㎡ (감 3,789.4㎡)
 - 도로용지 : 54,324.4㎡ → 58,113.8㎡ (증 3,789.4㎡)
 - 다. 토지이용계획

1) 지구면적표 (변경 없음)

잠실아파트지구 (자밀도)				
소 계 (m)	1 주 구	2 주 구	3 주 구	4 주 구
1,379,535.2	292,623.2	322,472.2	367,033.8	397,406.0

2)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계	1,379,535.2	100	1,379,535.2	100	변경없음
주거용지	985,458.4	71.43	981,669.0	71.16	감) 3,789.4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중 시 심 설	지구중심	-	-	-	-	-
	주구중심	34,488.4	2.50	34,488.4	2.50	변경없음
	분구중심	-	-	-	-	-
도 시 계 시 획 설	도로용지	149,105.1	10.81	152,894.5	11.08	증) 3,789.4
	공원용지	55,181.4	4.00	55,181.4	4.00	변경없음
	학교용지	142,241.7	10.31	142,241.7	10.31	변경없음
	기 타	13,060.2	0.95	13,060.2	0.95	변경없음

3) 4주구 면적표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계		397,406.0	100	397,406.0	100	변경없음
주거용지	주택용지	275,541.0	69.34	271,764.6	68.39	감) 3,789.4
중 시 심 설	지구중심	-	-	-	-	-
	주구중심	9,985.2	2.50	9,985.2	2.50	변경없음
	분구중심	-	-	-	-	-
도 시 계 시 획 설	도로용지	54,324.4	13.67	58,113.8	14.62	증) 3,789.4
	공원용지	15,886.2	4.00	15,886.2	4.00	변경없음
	학교용지	37,416.3	9.42	37,416.3	9.42	변경없음
	기 타	4,279.9	1.07	4,279.9	1.07	변경없음

- 4) 변경사유 : 잠실아파트지구 4주구 토지이용계획도 면적이 현황측량 면적과 일치하지 않아 주택용지 및 도로용지 면적 조정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잠실아파트지구 4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정(결정) 도서에 따름 (비치도서)
5. 지형도면작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

- 별시 주택공급과 및 송파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6.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3707-9775) 및 송파구청 주택과(☎410-338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3호
도시관리계획(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5호('96.05.28.)로 구역결정되고 1998.05.30 계획수립된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04.1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 취지

-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로 수립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관련 법·규정과 변화된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II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변경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봉천동 502,464번지 일대	12,170	감108	12,062	서고95호(96.5.28)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변경사유
변경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봉천동 502,464번지 일대	- 기정12,170 - 변경12,062 - 감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 기정면적 구성상 오차 - 감 108m²

III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062	-	12,062	1000	-
준주거지역	12,062	-	12,062	1000	-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가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670 (112)	봉찬동 463-40 (463-57)	봉찬동 58-7 (465-8)	일반도로	서고2호 (72.1.7)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준주거지역	-	SR-1, SR-2, SR-3, SR-4	-

2) 획지 결정(변경)조서

■ 최대개발규모

구 분	준주거지역		비 고
	간 선 변	이 면 부	
기 정	1,000㎡ 이하	500㎡ 이하	-
변 경	폐 지	폐 지	-

■ 대지의 분할

구 분	지 번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분할 가능선	봉찬동 738-77/ 463-59,463-2/ 738-158,820-6	-	신 설	적정개발규모 유도 및 주변 건 축물과의 조화 유도

■ 공동개발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계 획 내 용		비고	
		위 치	면적	기 정	변 경		
공 동 개 발	SR-1	봉천동	501-9 502-4-9-11 503-1-3-9 738-77-139~150, -158 820-5-6-10 818-1	37160	503-2-3 공동개발 권장	501-9, 502-4-9-11, 503-1, 738-77-139~149-158, 820-6-10 / 820-5-6, 503-2-3-9, 738-77-150-158, 818-1 각각 공동개발 지정 501-9, 502-4-9-11, 503-1, 738-77-139~149-158, 820-6-10 / 820-5-6, 503-2-3-9, 738-77-150-158, 818-1 공동개발 권장	-
	SR-2	봉천동	463-1-2-57~60, 60, 85, 464-45	1,9710	463-1-2-60 공동개발 지정 463-1-2-60 / 60 공동개발 권장	463-1-2-57~60, 85, 464-45 공동개발 지정 463-1-2-57~60, 85, 464-45 / 463-60 공동개발 권장	-
	SR-3	봉천동	464-41, 43, 45-8	1,1610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
	SR-4	봉천동	464-8, 45-2	20020	-	공동개발 권장	-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불 허 용 도
기 정	간선변	C	준주거 - 기숙사 - 주택(주상복합 제외) - 운수시설,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이면부	D	준주거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불 허 용 도
변 경	간선변	A	준주거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이면부	B	준주거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 숙박시설,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주2) 주거복합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지상 1~3층은 주거기능(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불허함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권 장 용 도		
			전 층	1층 전면	
기 정	간선변	5	준주거	- 전시시설 중 전시장 - 관람시설 중 공연장 - 운동시설 중 회원제 운동시설	-
	이면부	7	준주거	-	- 1,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전문판매점 - 판매시설 중 상점
변 경	간선변	A	준주거	- 판매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이면부	B	준주거	- 판매시설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기 정	준주거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접 도 조 건	계 획	
			기 준 용 적 률	허 용 용 적 률
기 정	준주거지역	가각부	450% 이하	600% 이하
		간선변	450% 이하	600% 이하
		이면부	400% 이하	500% 이하
변 경	준주거지역	8m이상(간선변, 8m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8m미만(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250% 이하	300% 이하

주1) 기정 용적률은 현행법상 용적률 내에서 별도로 적용함

주2)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필지는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250%/300%적용

■ 용적률 완화항목(기정)

내 용		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기 준	비 고
규제적 인센티브	공 동 건 축		법적 최소규모 미달 필지들 간의 공동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1.02	-
			법적 최소규모미달 필지와 법적 최소규모 이상 필지간의 공동건축 준수시	기준용적률×a	- 3필지이하 a=1.03 - 6필지이하 a=1.05 - 7필지이하 a=1.07
보상적 인센티브	공 동 건 축		법적 최소규모미달 필지가 아닌 필지들 간의 공동건축 규제 준수시	기준용적률×a	- 20m이상 도로변 a=1.07 - 기타 a=1.03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출입구 설치시	기준용적률×a	- 40m이상 a=1.05 - 20m이상 a=1.03 - 기타 a=1.02
	공 공 지		공공공지 조성시	{1+(제공면적/대지면적)×a}×기준용적률	- 5%이상 a=1.0 - 7%이상 a=1.3 - 10%이상 a=1.5 - 시장부지: 10%이상 a=1.0 15%이상 a=1.2
			공공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조성시	{1+(제공면적/대지면적)×a}×기준용적률	- 5%이상 a=0.5 - 7%이상 a=0.7 - 10%이상 a=1.0 - 시장부지: 10%이상 a=0.5 15%이상 a=0.6

내 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비 고
항 목				
유도적 인센티브	공개 공지	공공공지를 침상형태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alpha\}\times\text{기준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형으로 조성시 (지하철역사와 연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이상 $\alpha=1.0$ - 7%이상 $\alpha=1.3$ - 10%이상 $\alpha=1.5$ ● 시장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이상 $\alpha=1.0$, - 15%이상 $\alpha=1.2$
		공공공지를 인도형태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alpha\}\times\text{기준용적률}$	- 20m이상 $\alpha=1.0$ - 기타 $\alpha=1.2$,
		공공공지를 차도형태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alpha\}\times\text{기준용적률}$	- 4m이하 $\alpha=1.8$ - 6m이하 $\alpha=1.6$ - 8m이하 $\alpha=1.4$ - 10m이하 $\alpha=1.2$ - 10m초과 $\alpha=1.0$
		공개공지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설치의무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text{대지면적}]\times\text{기준용적률}$	-
		공개공지를 침상형태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설치의무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text{대지면적}]\times 1.2]\times\text{기준용적률}$	-
		공개공지의 차도형태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설치의무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text{대지면적}]\times 0.5]\times\text{기준용적률}$	-
	쌈지 공원	대지내 조경을 쌈지공원형태로 조성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alpha\}$ $\times\text{기준용적률}$	-
		쌈지공원을 피로티 구조로 조성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alpha\}$ $\times\text{기준용적률}$	-
	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alpha\}$ $\times\text{기준용적률}$	- 공공보행통로조성시 $\alpha=1.0$ - 보차혼용통로조성시 $\alpha=1.2$
	공동 건축	2필지 이하의 공동건축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alpha$	- 20m이하 $\alpha=1.1$ - 기타 $\alpha=1.03$
		3필지 이하의 공동건축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alpha$	- 20m이하 $\alpha=1.12$ - 기타 $\alpha=1.05$
	권장 용도	권장용도 수용시	$\{1+(\text{권장용도면적}/\text{건축연면적})\times 0.2\}$ $\times\text{기준용적률}$	-
	고층부탑 상형 건축물	고층부 탑상형 건축물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 1.05$	-
	공 동 주차장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장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alpha$	- 20m이상 $\alpha=1.03$ - 기타 $\alpha=1.02$
	공 용 주차장	공용주차장 조성시	$\{1+(\text{대지내주차대수}-\text{법정주차대수})\times 0.2/\text{법정주차대수}\}\times\text{기준용적률}$	-
	보행 통로	실내 및 지하공공 보행통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 0.1\}$ $\times\text{기준용적률}$	-

■ 용적률 완화항목(변경)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비 고
공 동 개 발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5 \times \alpha$	- 2~4필지 $\rightarrow \alpha=0.1$ - 5필지이상 $\rightarrow \alpha=0.15$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times 0.15$	-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0.8$	-
	쌈지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0.8$	-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대지면적) $\times 0.8$	-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중연결통로		기준용적률 $\times 0.02$	-
친환경 계 획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0.1$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 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사용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 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times 0.05$ 또는 대지면적 $\times 0.02$ 이상 설치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0.04$	-
	신재생 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3$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에너지절약계획	준수시	1등급	기준용적률 $\times 0.04$	-
2등급			기준용적률 $\times 0.03$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sum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leq 허용용적률
 2.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
 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3.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4.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
 5.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
 차장 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상한용적률

구 분	상 한 용 적 률
전구역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이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을 말하며,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임

3)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 건축물의 높이 결정(기정)조서

구 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 고
기 정	준주거지역	간선변	5층 이상(규제) 7층 이상(권장)	-	- 간선변 최고높이의 부재로 가로경관형성의 어려움 - 최저층수 규제로 자율적 개발제한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고높이	완화높이	비 고
변 경	준주거지역	간선변 (현대시장 주변)	50m 이하	70m 이하	「건축법」 제30조 제3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1.5D)을 적용하지 않음
		간선변	50m 이하	-	
		이면부	30m 이하	-	

주1) 최고높이의 완화는 공동개발지정/권장 모두 준수하고, 탑상형 개발시 적용

주2)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적용

3) 건축물의 배치(변경)조서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기 정	건축한계선 (규제)	- 정연한 가로경관의 확보 - 이면도로의 확폭	주요교차로 각각부 이면부 내부필지	-
변 경	건축한계선 (규제)	- 보행환경개선 - 유효한 전면공지의 확보 - 이면도로의 확폭	이면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 2m, 3m
		- 연속된 가로경관 조성 - 개방된 가로경관의 확보	은천길변 약수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공공공지	- 가로보행환경 개선 - 주요보행 결절점에 휴게공간 조성	- 공동개발시 기부채납	- 조성지침 제시
전면공지	- 가로보행환경 제고 -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 보행로와 연계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조성지침 제시
공개공지	- 가로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변 및 역세권부근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주요 보행결절점상에 조성위치 권장	- 조성지침 제시
썸지형공지	-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공개공지설치 미대상 필지	- 조성지침 제시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규 제)	- 간선가로변 차량출입불허	- 간선가로변	-
주차출입구	- 보행활동의 단절 및 침해 최소화 - 차량흐름 방해 최소화	- 이면도로의 주차동선 미확보 필지	-
공중연결통로 (권 장)	-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공중연결통로를 통해 보행 편의 제공	- 주변 아파트단지 인접 획지	-

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외 관 및 의장	1층부 형태 (규제)	- 도로변에 접한 대지	- 전면도로에 접한 지상1층 외벽은 투시율 50%이상 확보
	외벽처리 (규제)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 제한
건축물 형 태	- 가로공간에서의 개방감 유도 - 각각부의 인지성 제고 - 건폐면적의 최소화로 준공공적 옥외공간 확충	-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 고층건물을 탑상형으로 유도하여 가로에서의 시각통로확보 및 보행공간의 휴먼스케일 유지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전면부 처 리	1층 바닥높이 (규제)	- 보행활동의 연속성과 안전성 도로 및 가로경관 제고	-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 접한 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 차이는 10cm이하로 조성
	건축선 후퇴부분 처리(규제)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가 없게 조성 - 담장이나 기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의 설치 금지 - 공공부문 포장패턴 및 재료와 조화 를 이루는 포장재료 사용
건축물 부수 시설	옥외광고물 (규제,권장)	- 가로경관의 향상 및 보행환 경 확보 - 지구의 이미지 개선	- 도로변에 접한 대지	-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 광고물 조명 권장
	조 명 (권장)			- 장소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명 유도 - 야간조명 설치

4) 기반시설확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면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기부채납) ○ 지역의 인지성 제고 및 보행자의 휴게공간을 위한 공공공지 확보(기부채납)

■ 도로 확보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도로확보	- 적정통로 확보	- 43-60번지	- 도로로 기부채납

■ 공공공지 확보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공공공지 확보	- 가각부 인지성 확보 - 보행시의 휴게공간 조성	- 공동개발시 해당필지	- 공공공지로 기부채납

■ 기반시설 확보기준

가구번호	기부채납비율	비 고
SR-1	10%이상	○ 도로,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형태 및 면적은 건축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확보 기준 내에서 결정함
SR-2	10%이상	

III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IV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V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도면으로 같음함.

VI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 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53)와 관악구 도시관리과(☎02-880-3593)에 비치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4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328호(1996.12.04)로 구

역결정되고 1998.05.30 계획수립된 「대림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05.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장

I 결정 취지

-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로 수립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개정된 관련 법·규정과 변화된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II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대림지구중심 제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림지역중심 제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1643, 1655 번지 일대	20,100	-	20,100	서고시 제328호 (96.12.4)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m)	변경사유
변경	대림지역중심 제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림동 1643, 1655 번지 일대	2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역명 변경 -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III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적(m)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0,100	-	20,100	100.0	-	
일반상업지역	14,920	-	14,920	74.2	-	
주거지역	소 계	5,180	-	5,180	25.8	
	제1종일반주거지역	3,807	-	3,807	19.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3	-	1,373	6.8	-

2) 용도지구(변경없음)

■ 미관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m)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시흥대로	중심지 미관지구	신길동~시흥동 (신림동)	236,900 (3,900)	8000 (330)	12~20	서고194호 (84424)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m)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고도지구기타 (진입표면구역)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관악구 일부지역	33,204,000 (29,650)	-	-	서고138호 (94.53)	공항고도제한해발 (272.86m, 285.86m)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1)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일반상업지역	-	GC-1, GC-2, GC-3	신 설

2) 획지 결정(변경)조서

■ 최대개발규모

구 분	일반상업지역		비 고
	간 선 변	이 면 부	
기 정	-	1,000㎡	-
변 경	-	폐 지	-

■ 획지선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획지선	GC-1	신림동	1655-24-25	10996	1655-27,-28 공동개발 지정 1655-27,-28/24 공동개발 권장	획지선 지정	-

■ 공동개발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 (m)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공 동 개 발	GC-1	신림동	1643,1643-4~6	4099.3	1643-4~6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
	GC-2	신림동	1655,1655-1, -2 -4~6-8~10-12~ 14-30~32	3626.8	1655,1655-1 / 1655-4-5 / 1655-12-13 각각 공동개발 지정 1655,1655-1 / -6 1655-12, -13 / -8 각각 공동개발 권장	1655,1655-1, -6 / -8-12-13 각각 공동개발 지정 1655,1655-1, -6 / -8-12-13 /-2-4-5-9-10, -14,-30,-31,-32 공동개발 권장	-
	GC-3	신림동	1655-15~23, -29, -33, -35~37, -39	4631.4	1655-21, -37 / 1655-33, -35 / 1655-19, -20, -29 각각 공동개발 지정 1655-16, -17 / 1655-21, -37 / -23 각각 공동개발 권장	1655-15~17 / -19,-20,-29,-33,-35,-36 / -21, -22, -23, -37 각각 공동개발 지정 1655-15~17 / -19,-20,-29,-33,-35,-36 / -21,-23,-37 / -18,-39 공동개발 권장	-
				1655-26~28-42,-43	1,464.3	1655-27,-28 공동개발 지정 1655-27,-28/24 공동개발 권장	공동개발 지정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분 류	불 허 용 도
기 정	간선가로변	A	- 기숙사, 숙박시설(호텔 제외) - 종교시설, 창고시설, 공장 - 주택(주상복합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제외) -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동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이면부	B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변 경	일반상업지역	A	- 공동주택(주거복합건물 제외)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 위험물저장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주2) 주거복합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지상 1~3층은 주거기능(공동주택, 오피스텔)을 불허함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분 류	권 장 용 도	
			전 층	1층 전면
기 정	간선변	1	- 전시시설 중 전시장 - 관람시설 중 공연장	- 1,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대중음식점, 전문 판매점 (예시 : 서적, 레코드, 완구, 의류, 구두, 신변잡화 등) - 판매시설 중 상점
변 경	일반상업지역	A	- 판매시설, 업무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관람장	

주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

2)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기 정	일반상업지역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준수

■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접도조건		계 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 정	가각부		700% 이하	900% 이하
	간선가로변		600% 이하	840% 이하
	이면부		550% 이하	650% 이하
변 경	일반 상업지역	12m이상(간선변)	300% 이하	630% 이하
		12m미만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250% 이하	500% 이하

주1) 기정 용적률은 현행법상 용적률 내에서 별도로 적용함

주2)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필지는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250%/500% 적용

■ 용적률 완화항목(기정)

내 용		완 화 조 건	완 화 기 준	비 고
규제적 인센티브	공동 개발	법적 최소규모 미달 필지들 간의 공동개발	기준용적률×1.02	-
		법적 최소규모 미달 필지와 법적 최소규모 이상 필지간의 공동개발	기준용적률×a	- 3필지이하 a=1.03 - 6필지이하 a=1.05 - 7필지이하 a=1.07
공동개발	공동 개발	법적 최소규모 미달 필지가 아닌 필지들 간의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a	- 40m이상도로변a=1.09 - 기타 a=1.05
보상적 인센티브	공동 개발	법적 최소규모 미달 필지가 아닌 필지들 간의 공동개발규제	기준용적률×a	- 40m이상 도로변a=1.09 - 기타 a=1.05
	공동 개발	조성시	(1+(제공면적/대지면적)×a)× 기준용적률	- 5%이상 a=1.0 - 7%이상 a=1.3 - 10%이상 a=1.5

내 용		완 화 조 건	완 화 기 준	비 고
항 목				
보상적 인센티브	공공 공지	피로티구조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 a\}\times\text{기준용적률}$	- 5%이상 $a=0.5$ - 7%이상 $a=0.7$ - 10%이상 $a=1.0$
		침상형태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 a\}\times\text{기준용적률}$	- 5%이상 $a=1.2(1.5)$ - 7%이상 $a=1.5(1.8)$ - 10%이상 $a=1.8(2.0)$ ※()는 지하철역사와 연결시
		인도형태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 a\}\times\text{기준용적률}$	- 20m이상 $a=1.0$ - 기타 $a=1.2$
		차도형태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 a\}\times\text{기준용적률}$	- 4m이하 $a=1.8$ - 6m이하 $a=1.6$ - 8m이하 $a=1.4$ - 10m이하 $a=1.2$ - 10m초과 $a=1.0$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설치의무면적}, \text{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text{대지면적}]\times\text{기준용적률}$	-
		침상형태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설치의무면적}, \text{면적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text{대지면적}]\times 1.2]\times\text{기준용적률}$	-
		피로티 구조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설치의무면적}, \text{면적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 5\%)/\text{대지면적}]\times 0.5]\times\text{기준용적률}$	-
	쌈지 공원	대상지내 조경을 쌈지공원형태로 조성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 a\}\times\text{기준용적률}$	-
		피로티구조로 조성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 a\}\times\text{기준용적률}$	-
	보행 통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 조성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 a\}\times\text{기준용적률}$	- 공공보행통로조성시 $a=1.0$ - 보차혼용통로조성시 $a=1.2$
유도적 인센티브	공동 개발	2필지 이하의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a$	- 40m이상 $a=1.12$ - 기타 $a=1.05$
		3필지 이상의 공동개발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a$	- 40m이상 $a=1.15$ - 기타 $a=1.07$
	권장 용도	수용시	$\{1+(\text{권장용도면적}/\text{건축연면적})\times a\}$ $\times\text{기준용적률}$	- 시흥대로변 $a=0.5$ - 기타 $a=0.3$
	탑상형 고층부 탑상형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 1.07$	-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 1.05$	-
	공동 주차장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장 조성시	기준용적률 $\times a$	- 40m이상 $a=1.05$ - 기타 $a=1.03$
	공용 주차장	조성시	$\{1+(\text{대지내주차대수}-\text{법정주차대수})\times a$ $/\text{법정주차대수}\}\times\text{기준용적률}$	- 40m이상 $a=0.4$ - 기타 $a=0.3$
	보행 통로	실내 및 지하공공 보행통로 조성시	$\{1+(\text{제공면적}/\text{대지면적})\times a\}\times\text{기준용적률}$	-

■ 용적률 완화항목(변경)

항 목		내 용		완 화 기 준 (변 경)	비 고	
획지계획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α	- 2~4필지 α=0.25 - 5필지이상 α=0.3	
	획지선	준수시		기준용적률×0.3	-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 /주차장을 제외한건축연면적) ×1.0	-	
대지내 공 지	공 개 공 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3.5	-	
	쌈지형 공 지	조성형태,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3.5	-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전면공지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3.5	-	
대지내 통 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3.5	-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지침에 결정된 대지에 적용	
	공동주차장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친환경 계 획	자연지반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보존면적 ÷대지면적)×0.5	-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대지면적)×0.2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중수도시설 설 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 는 경우에는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 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이상 설치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 ÷대지면적)×0.04	-	
	신재생 에너지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0.05	- 건축공사비의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 용량의 1%이상을 부담	
	에너지 절약계획	준수시	1등급		기준용적률×0.1	-
			2등급		기준용적률×0.08	

- 주)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허용용적률
 2.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
 3.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친환경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
 4. 전층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20% 이상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5. 권장용도 중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은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수용시에만 용적률 완화(인센티브)를 적용

■ 상한용적률

구 분	상 한 용 적 률
전구역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a)이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 가중치란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 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비율을 말하며, a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임

3)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

■ 건축물의 높이 결정(기정)조서

구 분		최저층수	최고층수	비 고
기정	일반 상업 지역	가각부 7층 이상(규제) 10층 이상(권장)	-	- 최고층수 제한 없음 - 최저층수 규제로 자율적 개발 제한
	간선부	5층 이상(규제)	-	

■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최고높이	완화높이	비 고
변경	일반 상업 지역	가각부 100m이하	120m이하	-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간선부	80m이하	100m이하	

- 주1) 최고높이의 완화는 공동개발 지정/권장 모두 준수하고, 탑상형 개발시 적용
- 주2)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적용
- 주3)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의 건축물 높이는 30m이하로 적용

3) 건축물의 배치(변경)조서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기 정	건축한계선 (규제) - 이면도로내 보행자·차량통로 확보	협소도로 인접대지, 공개공지 인접대지	-
변 경	- 개방된 가로경관의 확보	시흥대로변	대지경계선에서 3m
	- 연속된 가로경관 조성	사거리변	대지경계선에서 5m
	- 보행환경 개선 - 유효한 전면공지의 확보 - 이면도로의 확폭	강남1길변 이면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2m(4m)
	- 보행자전용도로 폭원 확보	보행자전용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

※ ()는 공동개발 지정/권장 전부 준수시 적용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공공공지	- 가로보행환경 개선 - 주요보행결절점에 휴게공간 조성	- 공동개발시 기부채납	- 조성지침 제시
전면공지	- 가로보행환경 제고 - 보행공간, 녹지 및 휴게시설 조성 - 보행로와 연계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 조성지침 제시
공개공지	- 가로보행환경 개선 - 간선가로변 및 역세권부근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설치 대상 필지 - 주요 보행결절점상에 조성위치 권장	- 조성지침 제시
쌈지형공지	-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공개공지설치 미대상 필지	- 조성지침 제시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용기준
차량출입불허구간(규제)	- 간선가로변 전면차량출입불허	- 간선가로변	-
보행자전용도로	- 시흥대로에서 대상지로 이어지는 보행동선 조성	- 대상자내 조성	-
공동주차출입구	- 이면부의 도로개설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	- 이면도로에서 차량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	※ 공동개발 해제시 지정위치에 조성 가능

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외관 및 의 장	1층부 형태 (규제)	도로변에 접한 대지	- 전면도로에 접한 지상1층 외벽은 투시율 50%이상 확보
	외벽처리 (규제)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 제한
건축물 형태	- 가로공간에서의 개방감 유도 - 각각부의 인지성 제고 - 건폐면적의 최소화로 준공공적 옥외공간 확충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 고층건물을 탑상형으로 유도하여 가로에서의 시각통로확보 및 보행공간의 휴먼스케일 유지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전면부 처 리 전면부 처 리	1층 바닥높이 (규제)	- 보행활동의 연속성과 안전성 도로 및 가로경관 제고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	- 접한 도로 및 공지와 높이 차이는 10cm 이하로 조성
	건축선 후퇴부분 처리 (규제)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가 없게 조성 - 담장이나 기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 의 설치 금지 - 공공부문 포장패턴 및 재료와 조화를 이 루는 포장재료 사용
건축물 부수시 설	옥외 광고물 (규제,권장)	- 가로경관의 향상 및 보행 환경 확보 - 지구의 이미지 개선	도로변에 접한 대지	-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 광고물 조명 권장
	조명 (권장)			- 장소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명유도 - 야간조명 설치

4) 기반시설확보계획

○ 지역의 인지성 제고 및 보행자의 휴게공간을 위한 공공공지 확보(기부채납)
--

■ 공공공지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공공공지 확보	-각각부 인지성 확보 -보행자의 휴게공간 조성	-대형개발필지	-공공공지로 기부채납

■ 기반시설 확보기준

가구번호	기부채납비율	비 고
GC-1	10%이상	○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그 형태 및 면적은 건축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확보기준 내에서 결정함
GC-2	10%이상	
GC-3	10%이상	

IV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림지역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VI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도면으로 같음함.

VII 열람장소 :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6361-3553), 관악구 도시관리과(☎02-880-3593)에 비치합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5호
도시관리계획(상수역세권 주변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상수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07.0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

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I 결정취지

- 상수역세권으로서 인접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많은 도시여건 변화가 예상되므로 배후주거지에 대한 생활권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정비를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임.

II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상수역세권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상수동 309-9번지 일대	-	증38,906	38,906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비고
신설	-	상수역세권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 면적:38,906㎡ - 위치:상수동 309-9번지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역세권으로서 주변지역의 여건변화 반영 및 배후주거지에 대한 생활권기능강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 필요 	-

III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소계	38,906	-	38,906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10	-	1,110	2.9%	-
	제3종일반주거지역	37,796	-	37,796	97.1%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가정	-	미관 지구	일반 미관 지구	대흥동~합정동373 (상수동95~ 상수동319)	24,000	2420	양측 15	서고시 107호 (1980.03.26)	-

나.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1) 교통시설 (변경사항 없음)

■ 도로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606	10,795	-	-	-	1	105	1,478	1	501	9,317
대로	1	501	9,317	-	-	-	-	-	-	1	501	9,317
중로	1	105	1,478	-	-	-	1	105	1,478	-	-	-

주) 상기사항은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항임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가정	대로	3	126	28	보조 간선 도로	2,420 (501)	대흥동 (대로3-4)	합정동 373 (대로3-8)	일반 도로	-	서고시 120호 (78323)	-
가정	중로	2	18	20	집산 도로	1,320 (105)	동교동	하수동 강변 (와우산길)	일반 도로	-	건고시 177호 (62128)	-

주) 연장의 ()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항임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가구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SR-1, SR-2, SR-3 SR-4, SR-5, SR-6 SR-7, SR-8, SR-9	신 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SR-10	

나. 획지 결정조서

1) 최대개발규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구역	3,000㎡	-

2) 공동개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3,000㎡)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2,000㎡이상 통합개발시 개발면적의 5%이상 을 기반시설로 기부채납 및 용적률인센티브 부여

■ 공동개발

구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m)	계획내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SR-1	상수동 319-01대	45	3,000m ²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
		상수동 319-02대	194		
	SR-2	상수동 320-01대	880		
	SR-3	상수동 321-01대	227		
		상수동 321-02대	169		
		상수동 321-17대	139		
		상수동 321-18대	195		
	SR-4	상수동 322-01대	129		
		상수동 322-02대	132		
		상수동 322-03대	132		
		상수동 322-04대	112		
		상수동 322-05대	218		
		상수동 322-06대	228		
	SR-5	상수동 322-10대	30		
		상수동 322-11대	26		
		상수동 323-01대	128		
		상수동 323-02대	165		
		상수동 323-03대	112		
		상수동 323-04대	109		
		상수동 323-05대	118		
		상수동 324-01대	68		
		상수동 324-02대	165		
		상수동 324-03대	231		
상수동 324-05대		129			
상수동 324-06대	107				
상수동 324-07대	126				

구 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획내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SR-5	상수동 324-08대	136	3,000m ²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
		상수동 324-09대	321		
		상수동 324-10대	155		
		상수동 324-11대	152		
		상수동 324-12대	155		
		상수동 324-13대	142		
		상수동 324-14대	10		
		상수동 324-17대	162		
	SR-6	상수동 329-01대	434		
		상수동 329-02대	107		
		상수동 329-03대	142		
		상수동 329-05대	145		
		상수동 329-06대	221		
		상수동 329-07대	73		
		상수동 329-08대	83		
		상수동 329-09대	99		
		상수동 329-10대	138		
		상수동 329-11대	132		
		상수동 329-12대	136		
		상수동 329-13대	139		
		상수동 329-14대	83		
		상수동 330-01대	103		
		상수동 330-02대	142		
		상수동 330-03대	179		
		상수동 330-04대	162		
		상수동 330-05대	139		
		상수동 330-06대	129		
		상수동 330-07대	129		

구 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획내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SR-6	상수동 330-08대	129	3,000m ²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
		상수동 330-09대	99		
		상수동 330-10대	328		
		상수동 330-14대	175		
		상수동 330-15대	215		
		상수동 330-16대	202		
		상수동 330-17대	215		
		상수동 330-18대	205		
		상수동 330-19대	215		
		상수동 330-20대	205		
		상수동 330-21대	172		
		상수동 330-22대	150		
		상수동 330-23대	36		
		상수동 331-45대	26		
	상수동 331-46대	1			
	SR-7	상수동 153-04대	144		
		상수동 157-01대	2,127		
	SR-8	상수동 72-12대	100		
		상수동 72-22대	103		
		상수동 72-23대	12		
		상수동 95대	50		
		상수동 95-1대	145		
		상수동 95-3대	1,045		
		상수동 95-4대	111		
		상수동 95-5대	131		
		상수동 95-6대	245		
상수동 95-7대		139			

구 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획내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SR-8	상수동 95-9대	126	3,000m ²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
		상수동 95-10대	58		
		상수동 95-15대	220		
		상수동 95-16대	60		
		상수동 95-17대	20		
		상수동 95-19대	43		
		상수동 95-20대	96		
		상수동 95-21대	7		
		상수동 95-23대	173		
		상수동 95-30대	20		
		상수동 95-32대	40		
		상수동 95-40대	148		
		상수동 95-41대	12		
		상수동 96-2전	51		
	SR-9	상수동 139-10대	21		
		상수동 139-12대	21		
		상수동 140-3대	51		
		상수동 93-01대	132		
		상수동 93-02대	136		
		상수동 93-06대	86		
		상수동 93-07대	66		
		상수동 93-08대	93		
		상수동 93-09대	119		
		상수동 93-11대	79		
		상수동 93-12대	93		
		상수동 93-13대	83		
상수동 93-14대	33				
상수동 93-15대	102				

구 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획내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SR-9	상수동 93-16대	89	3,000m ²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
		상수동 93-17대	40		
		상수동 93-18대	116		
		상수동 93-19대	76		
		상수동 93-48대	112		
		상수동 93-49대	112		
		상수동 93-53대	152		
		상수동 93-54대	169		
		상수동 93-55대	139		
		상수동 93-56대	119		
		상수동 93-58대	142		
		상수동 93-72대	122		
		상수동 93-74대	83		
		상수동 140-02대	7		
		상수동 141-01대	1,677		
		상수동 141-02대	36		
		상수동 141-07대	137		
		상수동 143-11대	136		
		상수동 143-13대	139		
		상수동 143-15대	321		
		상수동 143-16대	354		
		상수동 143-17대	168		
		상수동 143-18대	195		
		상수동 143-20대	168		
		상수동 143-21대	514		
		상수동 143-25대	119		
상수동 143-33대	116				
상수동 143-37대	169				
상수동 143-38대	126				

구 분	가구 번호	위 치	면적(m ²)	계획내용	비 고
자율적 공동개발	SR-9	상수동 143-40대	142	3,000m ²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	-
		상수동 143-41대	116		
		상수동 143-42대	136		
		상수동 143-43대	7		
		상수동 143-45대	142		
		상수동 143-50대	7		
		상수동 150-01대	239		
	SR-10	상수동 309-01대	83		
		상수동 309-02대	122		
		상수동 309-03대	266		
		상수동 309-05대	202		
		상수동 309-06대	208		
		상수동 309-07대	97		
		상수동 309-08대	130		
		상수동 309-09대	201		

3.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건축물 용도	완 화 내 용
권장 용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운동시설 	건축물 연면적의 30%이상 도입시 : 기준완화높이 = 기준높이×0.05
용도 완화	제3종 일반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제한 없음

■ 용도완화

구 분	계 획 내 용	완 화 사 유
용도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용도의 바닥면적제한 완화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완화내용 : 바닥면적 기준 완화(면적제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수역세권 주변은 인접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의 진행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역세권으로서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의 바닥면적제한을 완화하여 풍부한 배후주거지에 대한 생활권기능을 강화하여 위계에 적합하게 관리하고자 함

나. 건축물 건폐율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

다. 건축물 용적률 계획

구 분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1(%)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0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라.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준높이(m)	최고높이(m)	
간선변	독막길	60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결정된 “대흥로변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63호, 2007.01.25)”기준 준용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기준높이 완화항목에 권장용도 도입에 따른 완화항목 추가 “대흥로변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에 해당되지 않는 구역은 해당 관련 법규에 따름
이면부	간 선 이면부	19	23	
		17	20	
	이면부	19	19	

■ 기준높이 완화

구 분	완 화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간선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공개공지/대지면적)×기준높이	변경 없음	
	공공보행통로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통로면적/대지면적)×기준높이		
		지하공간 연결통로	(통로면적×1.5/대지면적)×기준높이		
	건폐율	저층부 건폐율 40%이하	기준높이×0.1		
		탑상형이며 고층부 건폐율 35%이하			
	완화차선				
	기부채납		(기부면적×1.5)/대지면적×기준높이		
권장용도를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30%이상 도입시		기준높이×0.05	항목 추가		
이면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공개공지/대지면적)×기준높이	변경 없음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통로면적/대지면적)×기준높이		
	접도조건 양호대지		기준완화높이 = 3m		
	대지조건 양호대지				
대지구모 및 조경면적	대지구모	500㎡미만	전면 건축한계선 2m	(확보면적/대지면적)×기준높이	
		~1,500㎡	전면 건축한계선 3m		
		1,500㎡이상	전면 건축한계선 5m		
	조경면적	도로전면부	폭 3m이상 조성		
		도로전면 밀집	면적 30㎡이상 조성		

4.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막길변 : 3m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후퇴선) • 이면가로변 : 1m (쌍우물길, 농암길) 	-

나. 건축물의 형태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개방형 입면의 조성	간선부	- 개구부가 없는 벽면노출 금지 - 1층부: 개방형 입면(30%이상)으로 조성 - 셔터: 설치를 지양하되 설치사에는 투시형 (50%이상) 으로 설치	권장사항
외장재료	간선부	- 샌드위치 판넬 등 이와 유사한 조립식 재료의 건축 금지 - 페인트 등을 이용한 도장마감이 전면부의 50% 이상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벽화, 입면녹화 등을 통해 보행친화적 기로를 조성하도록 함	권장사항

5.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위치권장	• 서울시 건축조례상 제22조 공개공지 설치대상은 공개공지 설치	-

IV 관련도면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V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정도면으로 같음함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관련 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6361-3553)와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330-2074)에 비치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10980	(주)영근정보통신	금관영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1번지 3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81~1031)
2	111227	영진정보통신	김종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39-12 건영빌딩 2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81~1031)
3	110846	(주)유베이스	박대용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4 삼보 서비스빌딩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81~1031)
4	200060	(주)그린벨시스템즈	김문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82-29 우리벤처타운2 1102호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81~1031)
5	110664	세우테크노산업(주)	이병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5-11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81~1031)
6	112028	(주)유니드정보기술	김광훈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5-15 1층	등록기준미신고	영업정지3월 (089.16~12.15)
7	110969	일성통신(주)	장복기	서울 미포구 도화동 292-20 도원빌딩 지하1층	기준미달 (기술계1)	영업정지15일 (0881~815)
8	200783	(주)큐엘동작	전현용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311-27 대성빌딩 2층	기준미달 (자본금)	영업정지1월 (0881~831)
9	110564	뉴론에스(주)	최수현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7-40 샌츠티프라자 8층	기준미달 (자본금)	영업정지1월 (0881~831)
10	112633	(주)태민메카트로닉스	장상욱	서울 서초구 잠원동 23-7 오즈빌딩 3층	기준미달 (자본금)	영업정지1월 (0881~831)
11	112474	(주)에이투테크놀러지	안찬호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44-8 3층	기준미달 (자본금)	영업정지1월 (0881~831)
12	110832	(주)열림기술	김희수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9 에스케이테크노빌 13층	신고지연 (소재지)	영업정지10일 (0888~817)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2항, 제15조, 제23조, 제66조제2호의3, 제66조제3호, 제66조제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3. 행정처분 일자 : 2008. 8. 1.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28호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측량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일반측량업 02-01-205	(주)동경 엔지니어링	김중우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424 (02-749-364)	2008.7.29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33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알림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1. 제 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알림
2. 처분일자 : 2008. 7. 28
3. 처분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제1호

4.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처분내용	처분사유
1	2004-49	상원건설(주) 이정호	종로구 봉악동 19-1 은행빌딩 6층	등록취소	주금 가장납입행위

5.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우리시 경유)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주거정비과(02-3707-823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39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교관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2008-6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불찬범음 연합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50-40
4. 대 표 자 : 이 철 재
5. 허 가 일 : 2008. 7. 29.
6. 설립목적 : 불교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널리 중생을 구도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전통 불교의식의 체계 정

립과 계승 보급을 그 목적으로 함.

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43호
특별시도 노선인정**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도로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

□ 특별시도 노선인정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연장 (km)	전용 구간 (km)	중용 구간 (km)	비고
신규	시도	자곡~ 문정선	밤고개길 (자곡동 366-4)	송파대로 (문정동 310-3)	강남구 (동남권유통단지) 송파구	1.74	1.74		
신규	"	장지~ 문정선	송파대로 (장지동 641-8)	광평로 (문정동 150-14)	송파구 (동남권유통단지, 장지3교)	2.31	2.31		
신규	"	- (동부간선 연결램프)	현릉로 (자곡동 5149)	동부간선로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1.2	0.62	동부간 선로 0.58	
신규		항동~ 개봉선	남부순환로 (개봉동 307-8)	부천시계 (항동 산50-3)	구로구 (광덕로)	3.974	3.97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450호
측량업 신규등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측량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
일반측량업 02-01-2076	(주)서현기술단	안명숙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68-22 경은빌딩 5층 (☎02-749-3643)	2008.8.1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6361-3959)

구 고 시

2008년 8월 7일
중 구 구 청 장

◆ **중구고시 제2008-5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 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구 회현동1가28-4일대 회현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건물 지하와 지하철역 사이 지하층연결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여 지하철 이용자의 건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폭(m)	연장(m)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로	지하 도로	서울시중구회현동1가28-4번지 일대 (퇴계로)	35~82	45.4	-	33254	33254	-	-지하층연결로-33632m ² -승강기 - 622m ²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지하도로) 입체적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입체적 결정 규모		비고
				높이(해수면 기준)	면적(m ²)	
신설	도로	지하 도로	서울시중구 회현동1가 28-4번지 일대	30.44~36.00m	33632	지하층 연결로
				29.34~42.03m	622	승강기

3. 관련도면 : 생략(중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도시관리과(☎2260-190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성동구고시 제2008-4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연장) 및 지형도면

우리구 성수동 685-580일대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성 동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제한 사유

서울숲이 조성된 성동구 성수1가동 주변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능을 증진시키고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효력 발생)시까지 동 계획에 부합하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건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함.

2. 제한기간

- 당 초 : 2007. 8. 9 ~ 2008. 8. 8
- 연 장 : 2008. 8. 9 ~ 2010. 8. 8
- 다만,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내에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제한구역 및 범위

제한구역	위치	면적(m ²)	구역지정일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가 685-580 일대	436,240	2008.7.1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1호)

4. 개발행위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나. 허가제한의 예외

- 1) 8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허가(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
 - 가)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나)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다) 공공시설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보

수가 필요한 경우

- 라)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 계획이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된 경우
- 2)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
 - 가) 위 “1)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규모 미만인 경우
 - 나) 건축신고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허가제한일 전에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신청한 것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회(자문포함)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것.

3) 성동구 도시개발과(입안부서) 협의를 거쳐 협의조건 수용 등으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용도변경의 경우

5. 지형도면 : 게재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 강북구고시 제2008-3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서울특별시 강북구고시 제2008-16(2008.3.27)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어 강북구고시 제2008-33(2008.7.10)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된 『수유3동 229번지 자전거주차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100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코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02) 901-62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7일
강 북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229-29외 3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사업의 명칭 : 수유3동 229번지 자전거주차장 건설공사
- 다. 사업시행규모 : 철골조(사업면적: 358.4㎡)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

- 길 12번지(수유3동 192-59번지)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변경없음)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명세 : 별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02)901-6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수유3동 229번지 자전거주차장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주 소	성 명		
1	강북구 수유동	229-29	대	91.9	91.9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00-32 동문5차(아) 503-1501	김지현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신한프라이빗일산뱅크센터)	(주)신한은행	변경없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00-32 동문5차(아) 502-1002	김지혜					
2	강북구 수유동	229-30	대	88.6	88.6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9-30	최도순				변경없음	
3	당초	강북구 수유동	229-31	대	94.2	94.2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9-31	송정훈				면적축소
	변경	강북구 수유동	229-31	대	88.5	88.5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9-31	송정훈				
4	당초	강북구 수유동	229-32	대	91.2	91.2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1-5 도곡동삼성래미안(아) 103-304	강영욱	근저당권	서울시 송파구 신철동 11-6 (경동시장지점)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면적축소
	변경	강북구 수유동	229-32	대	89.4	89.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1-5 도곡동삼성래미안(아) 103-304	강영욱	근저당권	서울시 송파구 신철동 11-6 (경동시장지점)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주소	성명		
5	당초	강북구 수유동	229-54	대	10.1	10.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 서초(아) 104-1101	강영욱	압류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사업부지 제외
									가압류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52-15 2층	(주)케이엔지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청량리지점)	(주)국민은행	
변경	강북구 수유동	229-54	대	0	0	변경없음	변경없음					
6	당초	강북구 수유동	229-55	대	9.7	9.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250-2	김희숙	근저당권	군포시 산본동 1099 (당동지점)	군포농업 협동조합	사업부지 제외
	변경	강북구 수유동	229-55	대	0	0	변경없음	변경없음				

지 장 물 조 서

○ 사업명 : 수유3동 229번지 자전거주차장 건설공사

연번	소재지	구조 (지붕/벽체)	주용도	층별면적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층	면적 (㎡)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주소	성명	
1	강북구 수유동 229-29	세멘외증/ 연와조	근린생활시설	1층	94.8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00-32 동 문5차(아) 503-1501	김지현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신한프라이빗 일산뱅크센터)	(주)신한은행	변경없음
				담장 대문			김지혜				
2	강북구 수유동 229-30	세멘외증/ 연와조	단독주택	지1층 1층 담장 대문	7.97 52.96 1식 1식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9-30	최도순				변경없음
3	강북구 수유동 229-31	세멘외증/ 연와조	단독주택	지1층 1층 화장실 담장 대문	19.1 62.7 1.5 1식 1식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9-31	송정훈				변경없음
4	강북구 수유동 229-32	세멘외증/ 연와조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지1층 1층 화장실 담장 대문	26.9 73.3 1.2 1식 1식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1-5 도곡동삼성래미안(아) 103-304	강영욱	근저당권	서울시 송파구 신청동 11-6 (경동시장지점)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구조 (지붕/벽체)	주용도	층별면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층	면적 (㎡)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주소	성명		
5	당초	강북구 수유동 229-38	스라브/ 철근콘크리트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담장	1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서 초(아) 104-1101	강영욱	압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지장물 제외
									가압류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 52-15 2층	(주)케이앤지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청량리지점)	(주)국민은행	
	변경	강북구 수유동 229-38	스라브/ 철근콘크리트	변경없음	해당 없음	-	변경없음	변경없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수유동 229-38	스라브/ 철근콘크리트	변경없음	해당 없음	-	변경없음	변경없음	근저당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청량리지점)	(주)국민은행		
6	당초	강북구 수유동 229-40	세멘외죽/ 연와조	근린생활시설	담장	1식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250-2	김희숙	근저당권	군포시 산본동 1099 (당동지점)	군포농업 협동조합	지장물 제외
	변경	강북구 수유동 229-40	세멘외죽/ 연와조	변경없음	해당 없음	-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 노원구고시 제2008-46호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호(2005.1.31)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7호(2008.2.5)로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된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
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노 원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m)
기정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66,434

다. 정비계획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m)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434	-	66,434	100.0		
주거 지역	소 계	58,022	-	58,022	87.3	
	제2종일반주거지역	53,512	-	53,512	80.5	층수완화 (택지 : 평균16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4,510	-	4,510	6.8	
녹지 지역	소 계	8,412	-	8,412	12.7	
	자연녹지지역	8,412	-	8,412	12.7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66,434	-	66,434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6,926	증) 51.2	16,977.2	25.6		
	도 로	4,735	증) 167.1	4,902.1	7.4		
	공원	소 계	11,330.5	감) 115.9	11,214.6	16.9	
		공원1	7,733	감) 130.1	7,602.9	11.4	

구분	명 칭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정비 기반 시설 등	공원	공원2	1,709	-	1,709	26	
		공원3	1,888.5	증) 14.2	1,902.7	29	
	사회복지 시 설	860.5	-	860.5	1.3		
택지	소 계		49,508	감) 51.2	49,456.8	74.4	
	택 지 1		48,992	감) 51.2	48,940.8	73.7	
	택 지 2		516	-	516	0.8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가 능	사 용 형 태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26	30	간선 도로	일반 도로	(127)	공릉동 119	공릉동 119		
변경	대로	2	26	31	"	"	(127)	공릉동 119	공릉동 119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	180	공릉동 233-4	공릉동 244-15		
기정	소로	3	1	6~8	"	"	213	공릉동 233-4	공릉동 412-33	서고제60호 ('74.5.29)	
기정	중로	3	1	12	"	"	357	공릉동 230-13	공릉동 81-1	"	

※()는 대상지 인접구간에 관한 사항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①	공릉동 230-2번지 일대	7,733	감) 130.1	7,602.9	
기정	공원	어린이공원②	공릉동 230-9번지 일대	1,709	-	1,709	
변경	공원	어린이공원③	공릉동 228번지 일대	1,888.5	증) 14.2	1,902.7	

다)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사회복지 시설①	어린이집	공릉동 233-1번지 일대	8005	-	8005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m)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공릉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66,434	공릉동 230번지 일대	57	-	-	57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명칭	면적 (m)					
기정	택지1	48,992	공릉동 230번지 일대	공동 주택	25%이하	214.73%이하	평균6층이하
변경	택지1	48,940.8	공릉동 230번지 일대	공동 주택	25%이하	214.95%이하	평균6층이하
기정	택지2	516	공릉동 228-1번지일대	교회	관계법령에 따름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935세대(분양 798, 임대 137)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8%(596세대)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8%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 : 935세대(분양 797, 임대 138)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3.5%(594세대)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5%						
기정	○건축선 -관계법령에 따름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주요내용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적률 증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용적률 : $52,314.75\text{m}^2 / 48,992\text{m}^2 = 106.78\%$ - 계획 용적률 : 214.51% - 증가된 용적률 : $214.51\% - 106.78\% = 107.7\%$ ○증가용적률 25% : $107.7\% \times 25\% = 26.93\%$ ○연면적 환산 : $48,992\text{m}^2 \times 26.93\% = 13,193.55\text{m}^2$ ○임대주택 확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층 연면적 : $13,220.47\text{m}^2$ - 세대수 : 137세대 [전용면적 59.8m^2 : 83세대(60.6%), 전용면적 84.8m^2 : 54세대(39.4%)]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적률 증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용적률 : $52,314.75\text{m}^2 / 48,940.8\text{m}^2 = 106.89\%$ - 계획 용적률 : 214.72% - 증가된 용적률 : $214.73\% - 106.89\% = 107.84\%$ ○증가용적률 25% : $107.84\% \times 25\% = 26.96\%$ ○연면적 환산 : $48,940.8\text{m}^2 \times 26.96\% = 13,193.95\text{m}^2$ ○임대주택 확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층 연면적 : $13,290.089\text{m}^2$ - 세대수 : 138세대 <p>[전용면적 59.9m^2 : 84세대(60.9%), 전용면적 84.8m^2 : 32세대(23.2%), 전용면적 84.9m^2 : 22세대(15.9%)]</p>

-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6) 정비사업의 시행 계획 : 변경 없음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재건축 (관리처분방식)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신청	현황 : 687세대 계획 : 935세대 증) 248세대

- 2. 지형도면의 작성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노원구청 주택과에 비치·열람
-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노원구청 주택

과(☎ 950-3860)에 관계서류 비치·열람

◆ **은평구고시 제2008-64호**
도로구역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이를 고시함

니다.

2008년 8월 7일
 은 평 구 청 장

1. 도로구역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도로 개설	구도	백화사길 (의상봉길)	시립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판동 298의2 종삼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판동 산5의9	폭 6m 연장 770m	백화사	국립공원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마 을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과 국립공원 내방객 편의제공

2. 사업시행기간 : 결정고시일로부터 ~
 2011. 12. 31
3. 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은평구청 토목과
 (☎02-350-3524)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
 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
 시 계획임.

사업명 : 백화사길 도로개설

토 지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진관동	298-2	도	4,674	70		서울시					
2	진관동	301-8	대	297	44		고종화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9-1				
3	진관동	301-9	전	1,013	58		김희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26				
4	진관동	301-10	대	330	13		김희태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8-26	서부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권 설정	
5	진관동	301-11	답	443	77		모춘남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469-2				
6	진관동	301-15	답	136	69		모춘남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469-2				
7	진관동	301-16	답	33	29		유영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5-429	서부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권 설정	
8	진관동	산14-1	임	595	62		유영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5-429	서부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권 설정	
9	진관동	산14-2	임	694	203		모해진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2				
10	진관동	303-2	전	278	37		모명남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2				
11	진관동	303-16	대	284	9		허신	고양군 신도면 진관내리 142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	진관동	303-6	대	304	1		연춘남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469-2				
13	진관동	303-5	대	1,907	670		모명남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2	진관내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동 27-1	근저당권 설정	
14	진관동	산11-24	임	36	16		최희운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 영남탑스빌 아파트 107-404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설정	
15	진관동	305-6	도	69	39		최희운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 영남탑스빌 아파트 107-404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설정	
16	진관동	305-1	전	66	59		최희운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 영남탑스빌 아파트 107-404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설정	
17	진관동	305-2	전	394	325		김희령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0-1002				
18	진관동	305-7	도	205	84		김희령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0-1002				
19	진관동	305-4	전	608	4		김희령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20-1002				
20	진관동	306	전	179	8		서울시 은평구				압류	
21	진관동	306-1	전	347	58		공대역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299-13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2	진관동	306-2	전	383	192		공대역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299-13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23	진관동	307-6	도	140	46		모사용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90-1				
24	진관동	307	대	330	32		장익순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29-4 행운빌라 102호				
25	진관동	307-8	도	83	73		김정식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80				
26	진관동	307-7	전	1,046	114		김정식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80				
27	진관동	307-5	도	114	46		김정식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80				
28	진관동	307-1	전	618	55		김정식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80				
29	진관동	310	전	387	231		모대덕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17				
30	진관동	310-1	전	1,081	33		최민외 1인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9-9				
31	진관동	310-4	대	479	28		최욱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53-2				
32	진관동	310-5	대	850	163		최정외 1인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37-35				
33	진관동	312	대	494	102		이상원외 3인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4-104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4	진관동	312-1	대	330	103		빈석준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64-9				
35	진관동	312-2	전	83	35		정명길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200	서부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권 설정	
36	진관동	313	대	304	87		정명길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200	서부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397-95	근저당권 설정	
37	진관동	313-1	대	635	119		조원규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22-1				
38	진관동	312-2	대	212	92		배창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1-4				
39	진관동	313-3	전	284	38		배창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1-4				
40	진관동	산25	임	1,175,787	53		산림청					
41	진관동	산5-9	임	17,950	11		배창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1-4				
42	진관동	298-1	도	4,338	325		서울시					
43	진관동	302-2	도	28	10		정희창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70-2				
44	진관동	302-1	전	1,291	66		정학재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70-2				
45	진관동	302-3	답	586	15		서울시 은평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6	진관동	298-13	도	1,150	67		서울시					
47	진관동	303	답	311	111		모명남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2				
48	진관동	303-1	전	1,888	246		모명남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2				
49	진관동	303-17	도	155	146		모동익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42				
50	진관동	산11-25	임	63	60		최희운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 영남탑스빌 아파트 107-404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근저당권 설정	
51	진관동	305	답	658	51		남조완	1071 사우스 라시엔나가 블르버드 샵201 엘에이 캘리포니아 90035				
52	진관동	306-8	도	182	105		김은미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82 무악현대아파트 110-1701				
53	진관동	307-4	도	169	86		김정식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180				
54	진관동	298-14	도	532	347		서울시 은평구					
55	진관동	311-1	전	304	82		최민외 1인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37-35				
56	진관동	311-2	전	245	200		이용희외 2인	서울시 도봉구 창동 585-96				
57	진관동	290-24	구	5,762	30		서울시					

물 건 조 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진관동 303-1전	주차장	기와/세멘블록	18		모명남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03-5				
2	진관동 303-1전	주택	슬래트/세멘블록	96.53		박정의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42				
3	진관동 306-8도 진관동 306-7전	주택	기와/적벽돌	182		김화성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90-2				
4	진관동 307-4도 진관동 307-3전	주택	슬래트/세멘블록	62		조성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19-3				
5	진관동 307-4도 진관동 307-3전	주택	기와/세멘블록	32		모정익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11				
6	진관동 307-4도 진관동 307-3전	주택	기와/세멘블록	38		김정식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180				
7	진관동 310-5대	주차장	슬래트/철골조	5		정경선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2				
8	진관동 298-14도	화장실	슬래트/세멘블록	7		정경선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2				
9	진관동 312대	비닐하우스	비닐/철골조	7		이영술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34				
10	진관동 312-1대	주택	기와/세멘블록	70		빈석준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64-9				
11	진관동 312-2전	비닐하우스	비닐/철골조	40		정명길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200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	진관동 313대 진관동 313-1대	비닐하우스	비닐/철골조	13		정명길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200				
13	진관동 313대 진관동 313-1대	창고	슬레이트/세멘블록	42		정명길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200				
14	진관동 313-1대	창고	조립식	12		조원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3-1				
15	진관동 313-1대	주차장	비닐/철골조	13		조원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3-1				

**◆ 서대문구고시 제2008-6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신동 140 ~ 신촌동 52-2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지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

계획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7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대신동 140 ~ 신촌동 52-2 도로는 「신촌동 27-1외 4필지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였으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가 2007.5.10자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소되면서 도로개설의 효용성이 결여되어 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기능	기 점	종 점	최초 결정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류		6	181	국지도로	대신동 140	신촌동 52-2	서대문고시 제999-116호 (1999.12.29)	

다. 관계도면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 비치 도면과 같음)

**◆ 서대문구고시 제2008-6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지를 결정하여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7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1973.2.13. 연희동 115-33호 일대 임야 토지에 대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이 도로를 개설 또는 변경결정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면 도로의 약 3m 축대 위 사유지 율타리로 35년동안 사용하고 있어 도로의 이용성과 개설에 대한 효용성이 결여되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조서

구분	구 모				연장 (m)	가능	기 점	종 점	최초 결정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류		6	20	국지도로	연화동 446-141	연화동 446-62	서울특별시고시 제51호 (1972.10.20)	

다. 관계도면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 비치 도면과 같음)

◆ 서대문구고시 제2008-6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간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중복결정하여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와 지적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7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인근 주택가 및 문화체육회관 이용 주민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흥연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병행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주차장을 중복결정 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주차장) 중복결정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최초결정	비 고
신설 (주차장)	학교	초등학교	흥은동 305번지	12,100	학교결정 : 서울시고시 제110호 (1974.8.9)	<중복결정> - 지상: 학교(기정) - 지하: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2,895		

다. 관계도면 : 생략(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 및 지적과 비치 도면과 같음)

◆ 마포구고시 제2008-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6(2008.03.06)호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학교)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서강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88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96·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법률 제91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시하고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330-2053~5)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08년 8월 7일
 마 포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신수동 1-1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나. 규모(세부변경 내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나. 명칭 : 서강대학교 제2학생회관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158,900㎡

구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제2학생회관	1,622.50	2,324.31	+701.81	1,849.60	3,648.44	+1,798.84	경미한변경

4. 사업시행자
 가. 성명 :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대표이사 박홍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1번지
5.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09.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양천구 균형발전추진반-2627호(2006.09.15)로 조합설립 인가된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및 의견 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 **양천구고시 제2008-25호**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2호(2005.11.24)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
- 나. 기반시설

- 2008년 8월 7일
 양 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612-13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50,947.50㎡
 가. 택 지 : 40,725.90 ㎡

구 분	도 로	공 원	기반시설부지
면 적	4800.70 ㎡	3001.30 ㎡	2419.60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513-11번지 우리은행 3층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 ~ 32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08년 7월 31일

7.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신월·신정뉴타운 제1구역4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광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513-11번지

우리은행 3층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별도비치

9.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택지
건축계획	
대지면적	40,725.90 m ²
건축면적	8,197.002m ²
건 폐 율	20.13%
연 면 적	135,980.743m ²
용 적 률	234.93%
층수(높이)	지하2/지상12~20층(57.60m)
세 대 수	930
주 용 도	공동주택(조합원, 일반분양 아파트 및 임대주택)

10. 주택의 규모 등 주택 건설계획

공급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m ²)							
				36형 (36.806)	59A형 (59.747)	59B형 (59.474)	59C형 (59.948)	84A형 (84.984)	84B형 (84.966)	116형 (116.375)	129형 (129.368)
계	공동주택	11	930	160	118	23	58	294	182	76	19
분양	공동주택	9	770		118	23	58	294	182	76	19
임대	공동주택	2	160	160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청에 무상 귀속 : 7,194.30 m²
(도로:1,918.40m², 공원:3,001.3m², 사회복지시설부지:2,274.60m²)
나. 국공유지 무상양도 : 국·공유지 매각시 결정

12. 기타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09) 및 신월·신정 뉴타운 제1구역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2608-000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강서구고시 제2008-55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
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1호(1997.01.31)로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22호(2006.12.14)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된 까치산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

68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강 서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취지 : 획지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m)	계획내용	
			기정	변경
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구역	화곡동 899-29	319	공동개발	단독개발 공동주차출입구
	화곡동 899-30	330.6		단독개발 공동주차출입구
	화곡동 343-52	154.4	획지	획지
	화곡동 343-53	129.5		
	화곡동 343-55	126.9		
	화곡동 343-69	132.2		
	화곡동 343-80	120.9		
	화곡동 343-54	130.2		
	화곡동 343-57	305	획지	단독개발
	화곡동 926-7	233.4	공동개발	공동개발
	화곡동 926-8	223.5		
	화곡동 926-5	692.9	공동개발	
	화곡동 926-6	432.6		

다.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84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동작구고시 제2008-3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호**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7-64호(2007. 10. 4)로 결정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정소송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

형도면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동 작 구 청 장

1. 실효일자 : 2008. 6. 13.
2. 실효된 도시관리계획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실효조서

구분	규 모				가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	8	국지도로	325	신대방동 712	신대방동 607-20	일반 도로	2007. 10. 4	

3.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행정소송(사건번호: 2007구합46418)이 제기되어 판결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처분 취소” 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함.

4.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820-981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7일
동 작 구 청 장

**◆ 동작구고시 제2008-3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 우리구에서 입안한 아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결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2.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가. 본선(환기구)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 모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 정	철 도 (7호선)	도시철도 (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	구로구 은수동 산2-1	건대입구 이수 대림	-연장43.76km -폭10~30m	1991. 7. 24 (건설부고시 제399호)	
변 경	철 도 (7호선)	도시철도 (7호선)	도봉구 도봉동 16	구로구 은수동 산2-1	건대입구 이수 대림	-연장43.76km -폭10~30m	1991. 7. 24 (건설부고시 제399호)	환기구가이설 (427m)

나.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철 도 (7호선)	도시철도 (7호선)	동작구 사당동 147번지앞	9,734	1998. 3. 24 (서고1998-77호)	
변 경	철 도 (7호선)	도시철도 (7호선)	동작구 사당동 147번지앞	9,889 (증 156)	1998. 3. 24 (서고1998-77호)	출입구변경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시설명	위 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철 도	동작구 사당동 147번지앞	길이(m)	165	-	165	1998. 3. 24 (서고1998-77호)	출입구 입체결정 39~152m
		폭(m)	23~32	-	23~32		
		높이(m)	-115~95	-	-115~95		
		층 수	-	-	-		

3. 관련도면 : 생략(비치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 서초구고시 제2008-3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일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을 변경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 초 구 청 장

1. 변경결정취지 : 당초 고시된 시설의 공부상 면적이 실제 시설면적과 상이하므로, 사업부지 경계의 변경이 없는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공청사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일대	113,408	(감)1,224	112,184	1977.11.04	

- 기관의 명칭변경에 따른 시설명 변경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서울특별시 인
재개발원)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
음)
4.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570-
6385), 서초제1동사무소(☎598-3161), 서초
제3동사무소(☎588-3640)에 비치하여 일
반이 열람할수 있음.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08-47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환기구) 실시계획
열람**

1. 서울특별시고시제2008-33(2008.2.5)호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502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나. 사업의 개요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총 사업 규모	비고
광진구 군자동 502번지 일대	· 도시계획시설사업 (철도) · 지하철 7호선 환기구 이설공사	면 적: 457.56㎡	

다. 사업시행자 : 박은중[강동구 들말길 19(성내동 43-6)]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고 시일로부터 2009.1.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아.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 (450-7685)

**◆ 노원구공고 제2008-38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1. 노원구고시 제2008-29호(2008.5.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작성

를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보할 것이나 미수령하신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2008년 8월 7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고시된 상계동 193-3 ~ 193-2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토목과(☎950-4023)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노원구청(토목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2008년 8월 7일 노 원 구 청 장</p> <p>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 다. 사업의 개요</p>		<p>업 나. 사업의 명칭 : 상계동 193-3 ~193-2 간 도로개설공사</p>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비고
상계동 193-3 ~193-2	상계동 193-3 ~193-2간 도로개설공사	B= 6m L=30m	노원구고시 제2008-29호 (2008.5.15)	
<p>라. 사업의 시행자 : 노원구청장(노원구 노해길 183)</p> <p>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p> <p>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 세 : 별첨</p> <p>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 주소, 성명 : 별첨</p> <p>아. 공람공고 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20 일간</p> <p>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토목과 (☎950-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p>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상계동 193-2~193-3간 도로개설 공사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 권리	
1	노원구상계동 193-45	전	31	31	231/562	최명학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93-1				
					231/562	소명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93-1				
2	노원구상계동 193-47	창고 용지	142	142		신영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3-5	(주) 금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근저당	
- 이 하 여 백 -											

물 건 조 서

○ 사업명 : 상계동 193-2~193-3간 도로개설 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종류	수량 (m)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 외의 권리	
1	노원구상계동 193-3	창고 시설	철 골 조 (벽체/지붕-경 량판넬)	80	유리 가공 공장	신영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3-5				전체 239㎡
	“	호이스트(크 레인)		1대	크레인	신영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3-5				
	“	이동식 화장실		1개소		신영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3-5				
	“	오동나무	흉고15Cm	1주		신영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3-5				
		- 이 하 여 백 -									

영 업 권 조 서

○ 사업명 : 상계동 193-2~193-3간 도로개설 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상 호	영 업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 외의 권리	
1	노원구상계동 193-3	(주) 동해유리 (유리가공 제작 판매)	신 영 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93-5				
		- 이 하 여 백 -						

◆ 금천구공고 제2008-321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2008년 8월 7일
 금 천 구 청 장

1. 건설부고시 제34호(1968.1.15)로 공원조성 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31호(2005.8.4)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열람공고 합니다.
3. 열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시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12-7 등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동네뒷산(관악산) 공원화 조성사업>
 다. 면 적 : 9,258㎡
 라. 사업내용 : 공원조성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바. 사업착수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자. 열람장소 :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890-2395~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일련	소재지	지목	지적 (m)	사용(수용)할 면적(m)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비고
					성명	공유지분 (m)	주 소		
합 계			74570	9258					
1	시흥동 산12-11	임야	1,150	1,150	금천구			없음	
2	시흥동 산12-12	임야	2,900	400	금천구			없음	
3	시흥동 산12-7	임야	69,110	6,388	이병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5-3	없음	
4	시흥동 216-2	전	262	262	이병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5-3	없음	
5	시흥동 217	전	1,058	1,058	이병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35-3	없음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수량	단위	비고
녹지 등	지반정비	1	식	
	산책로	1	식	
	체육시설	1	식	
	자연학습장	1	식	
	수목식재 등	1	식	

◆ 영등포구공고 제2008-50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및 주차장(중복)]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05-412호(2005.12.22.) 및 영등포구고시 제2008-42호(2008.07.24.)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및 주차장(중복결정)] 설치를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및 주차장(중복결정)]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도서를 열람

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7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및 주차장(중복결정)]사업
- 2) 명 칭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차장, 광장시설 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외 4필지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 도 로

규모				가능	연 장 (m)	면적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대로	2	2	24~30	보조 간선 도로	370 (325)	28726	영등포동4가 184-1	영등포동4가 55	일반 도로	경 방 부 지 북 단	
대로	3	133	25~30	보조 간선 도로	1,560 (260)	3,767.0	영등포동3가 대1-38 영등포동4가 대441-10)	당산동6가 (영등포동4가 대441-26)	일반 도로	영등포 고 가 도로	도로확폭 및 선형변경
중로	1		20	국지 도로	100	2,130.9	영등포동4가 대로3-133	영등포동4가 대로2-2	일반 도로	경 성 방 직 북서측	

* ()안은 사업구역 내 연장

2) 광 장 및 주차장

시설명	위 치	면 적 (㎡)	규 모		비 고
			길이	폭	
광 장 주차장	영등포동4가 441-10	3,602.6	길이	120.4m	중복결정
			폭	30.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주) 경 방
 -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1-10
-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사.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도시경관과
- 아. 사용할 토지 조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도시경관과(☎ 2670-36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08-625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사업 공
사완료**

1. 서초구 염곡동 302-1번지 일대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1996-1호(1996.1.3)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7-71호(2007.12.27)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사업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초구 도시계획과(☎570-638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시설명	위 치	면적(규모)	현소유자	귀속관청	비고
도로 (신설)	서초구 염곡동 302 - 8	B = 10m L = 99.82m(a=99.8m)	한 국 전력공사	서초구	
도로 (확장)	서초구 염곡동 302 - 7	B = 5m(50→53.5m) L = 10m(a=35m ²)	한 국 전력공사	서울 특별시	

자. 위치도, 평면도, 설계도서 : 생략(서초 구 도시계획과 비치)

보입니다.

2008년 8월 7일
서 초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2-1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도로)사업
- 다. 사업의 명칭 : 154kv 염곡변전소 및 도로건설공사
- 라. 사업면적 및 규모
 - 1) 전기공급설비(변전소) : 5,920m²(지상1층/지하3층, 건축연면적 : 3,805.85m²)
 - 2) 도로 신설 : B=10m, L=99.82m (a=99.8m²)
 - 3) 도로 확장 : B=3.5m (50→53.5m), L=10m(a=35m²)
-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167번지 한국전력공사
- 바. 사업시행기간 : 1996. 1. 3 ~ 2008. 12. 31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생략(서초구 도시계획과 비치)

사업소고시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3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기선척,부선척)	성산대교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8. 08. 01. ~ 2008. 12. 30.	2008. 7. 22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기선척,부선척)	한강교량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8. 07. 28 ~ 2008. 12. 31.	2008. 7. 28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3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기선척,부선척)	한남대교 하차보수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8. 07. 30. ~ 2008. 08. 15.	2008. 7. 29.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8-13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 천 명 및 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기선척,부선척)	서강대교 하차보수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8. 8. 16. ~ 2008. 8. 27.	2008. 7. 29.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41-2번지 일원
 - 면 적 : 24.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시추조사
 - 개 요 : 시추기(D=76.2mm)를 이용한 토질조사 1개소
5. 점용기간 : 착공일 ~ 3개월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지구 일원
 - 면 적 : 18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점프 가설구조물 설치
 - 개 요 : 점프대(L=21.0m, B=9.1m, H=8.2m) 1개소
5. 점용기간 : 2008.07.30 ~ 2008.08.1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8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53(화곡동 980-16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86-2번지 일원
 - 면 적 : 21.0㎡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시추조사
 - 개 요 : 시추기(D=76mm)를 이용한 지반조사 1개소
- 5. 점용기간 : 2008.07.25 ~ 2008.08.1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기상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460-18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77-1번지
 - 면 적 : 1.0㎡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 결빙관측 안내표지판 설치
 - 개 요 : 안내표지판(0.6m×0.45m) 1EA
- 5. 점용기간 : 2008.07.25 ~ 2013.07.24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18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9번지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20번지 등 107필지
 - 면 적 : 76,422㎡(영구: 56,255㎡, 일시: 20,167㎡)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 개 요 : · 영구시설물
 - 옹벽설치: L=1,762m(L형옹벽 130m, 컨틸레버형옹벽 1,632m)
 - 수락고가교 확장 L=300m 교대2개소, 교각 8개소
 - 지하차도 2개소 L=420m(상도지하차도 L=180m, 장암지하차도 L=240m)
 - 상일보도육교 재설치 L=34m, 교각 12개소
 - 임시시설물: 가도설치 L=2.25km
- 5. 점용기간 : 영구

사업소공고

**◆ 은평소방서공고 제2008-24호
소방시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은 평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업 종	상 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비고
제은평2008-4호 (2008.07.31)	전문소방시설 감리업 (기계·전기)	무진소방이엔씨	서중희 (1971.04.08)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15번지	

※ 자세한 사항은 은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384-0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8-29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제2호 나

목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구 로 소 방 서 장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처분사유	처분의 종류 및 기간	적용법규
(주)에스알이엠 (구로구 구로1동 646-6) (☎ 855-5670)	차영숙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제구로2006-15호) (2006.06.29)	법정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제2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3월) (2008.07.29~2008.10.26) ※ 1년에 동건으로 2회 적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제2호 나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2682-50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8-30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 제2호 바목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구 로 소 방 서 장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처분사유	처분의 종류 및 기간	적용법규
(주)유일엔지니어링 에프앤씨 (구로구 구로동 544-1 엘림빌딩 401호) (☎ 852-1035)	김도원	전문소방 시설공사업 (제구로2006-26호) (2006.02.27)	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위반 ※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	제1차 행정처분 (영업정지 1월15일) (2008.08.01 ~ 2008.09.1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및 제24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제2호 바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2682-50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소방서공고 제2008-19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소방시
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하였기에 소방시
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7일
영 등 포 소 방 서 장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행정처분 사 유	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간	적용법규
주식회사 하이프스건설 [영등포구 태양길 9-7(대림동 911-34)]	김용환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영등포 2004-5호 (2004.05.25)	등록기준(기술인력)미달 1차 행정처분(시장명령) 미이행	영업정지 3월 (2008.08.06 ~ 2008.11.0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제1호다목· 제2호나목